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32

발의연월일: 2021. 4. 16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최인호 · 김정호

김윤덕 • 박 정 • 진성준

어기구 · 임오경 · 이정문

양향자ㆍ허 영ㆍ윤후덕

이용빈 · 홍기원 · 문정복

서영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 비운항 노선을 폐지하도록 하며,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1년, 항공비자유화 지역의 경우 6개월을 휴지 가능 기한으로 함. 슬롯(Slot) 및 운수권은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자연재해·감염병·천 재지변·전쟁·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, 노선 폐지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폐지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.

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% 감소하는 등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. 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에 행정·재정 낭비가 소요되고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노선을 회복할 수 없어 항공수요 회복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슬롯(Slot)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함(안 제24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·감염병·전쟁 ·내란·폭동·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24조(항공운송사업의 휴	-업과	제24조(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
노선의 휴지) ① ~ ④	(생	노선의 휴지) ① ~ ④ (현행과
략)		같음)
<u> <신 설></u>		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
		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・감염병
		<u>•전쟁·내란·폭동·테러 등</u>
	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
		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
		개가 불가한 불가항력적인 사
		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
		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
		<u>수 있다.</u>